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7. 9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7. 9
- 다. 상 정 일 자 : '97. 7. 23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보건소장 이 대 현

나.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관련조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때	법제9조 제2항	10	30	50
2.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9조 제3항	10	20	30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때	법제9조 제4항	20	30	50
4.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때	법제12조 제2항	20	30	5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부. 끝.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97 - 98
----------	---------

제출년월일 : 1997. 7. 9.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관련조항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때	법제9조 제2항	10	30	50
2.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9조 제3항	10	20	30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때	법제9조 제4항	20	30	50
4.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때	법제12조 제2항	20	30	50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3조(과태료와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의한 청문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납부통지)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납부할 것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화순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